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37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김병기·한준호·한병도

문진석 • 박상혁 • 장경태

윤종군・황운하・김 윤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고차 수리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직영서비스센터 선호 경향 등으로 인해 직영서비스센터에 과도하게 일감이 몰리더라도 해당 자동차정비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소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 정비업체와의 일감나누기 또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모품 교환 등과 같은 단순정비 또는 판금·도장 작업의 경우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

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감나누기를 통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 신설).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자가 소모품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 정비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매출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용하도록 권유하 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	금지 행위) ①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	4
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u><단서 신설></u>	<u>다만, 자동차정</u>
	비업자가 소모품 교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정비
	나 판금·도장 수리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u><신 설></u>	<u>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u>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가맹본부가 같
	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 가맹점사업자의 매출향상</u>
	을 위하여 가맹점을 이용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u> <신 설></u>	<u>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u>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